

전기자전거류의 구분

RRA KSDB 제13-1호 (2019.12.23.)

□ 개 요

-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

□ 근 거

- 「전파법」 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-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□ 내 용

-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기에 한하며,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11호 다목 52)로 분류
- "전기자전거"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의2호에서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 - 페달(손페달을 포함한다)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
 -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
 -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